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7,886,046	15,536,581
일반회계	470,557,686	14,116,731
특별회계	47,328,360	1,419,851
기타특별회계	47,328,360	1,419,8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71,225	440,137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20,823,636	624,70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13,193	15,39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30,856	6,926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265,246	157,957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819,670	174,59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534	136

제 2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1,912,50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5,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